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년 1월 일
발 의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지방세법」개정 시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세율 적용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종류별, 영업용·비영업용으로 나열한 것을 상위 법령인「지방세법」에 정한 자동차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4. 11. 26. ~ 2014. 12. 16(20일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영업용비영업용배기량시시당 세액배기량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승용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구분영업용비영업용고속버스대형전세버스소형전세버스대형일반버스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11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적재정량영업용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구분영업용비영업용대형특수자동차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000원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